

작업시방서

1. 공 사 명 : 거주자주차구획선 및 노면표시 정비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0. 11. 30.까지
3. 공사내용 :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재 도색, 넘버링, 구획선 삭선, 노면표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

가. 주차구획선 재 도색 및 노면표시 정비 총: 12,224m 폭 0.15m

- 구획선 재 도색 : 12,224m (1,652면)

나. 번호도색 (넘버링) : 4,763m(1,488면)

다. 주차구획선 삭선(주차면 4자 넘버링 포함한다) : 1,147m (155면)

라.넘버링 (숫자)164면 해당 보수작업을 한다.

마.유리알 첨부사진 제출한다.

사. 일일 작업 완료 후 작업일지(작업완료사진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도장 및 폐지(삭선)

가. 도료 및 각종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일기가 불순하거나 작업 여건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섭씨 5도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공하는 경우에는 우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습기를 제거한 후 라인 마커를 사용하여 칠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재 도장 균열 부분에 대하여 견고히 칠하여야 한다.

라. 도료 및 각종 재료를 미리 혼합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교반하여 침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삭선 하는 경우에는 제거기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시공 중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현장 조사 누락 부분) 추정 설계 사항과 향후 정비 공사 사유가 발생하는 사항은 현장 여건에 맞도록 시공자(도급자)가 이의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사. 주정차 금지선과 이와 유사한 교통안전표시(도장) 등의 신설 및 폐

지 사항 발생시 본 단가 계약에 포함한다.

5. 제반 법규의 준수

- 가. 공사는 설계서 및 도면에 의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독자 및 관할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나. 공사는 착공 전 착공계 및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기 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 다.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규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라. 작업 근로자에 대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 작업은 주말(토, 일요일) 09:00~18:00까지 한하여 가능하나 우리공단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6. 안전관리 및 조치

- 가. 공사는 사전에 이해관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 예고를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시공 중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는 항상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여 제반 작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시공 중 각종 시설물과 차량 등 재산을 파손,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내지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라. 공사에 필요한 안전 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차량이나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복 착용 후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 시공 중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환경오염 방지 : 시공자는 시공 중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하여 소음

및 분진 발생에 대한 감소 노력을 하여야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8. **공사 기록 사진** : 시공자(도급자)는 공정별로 시공 전·중·후 장면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각 3부씩 작업일보 및 준공검사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10. **하자기간** : 준공 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11. 공사 수량은 공사 내용별로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공사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단, 공사물량감소 시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지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관련 법규와 일반 공사 관례에 따른다.

기타추가내용

- 도료에 대하여는 노면표시 지방기준에 의거한 품질기준을 만족하고 이에 따른 내구성, 휘도, 야간 및 우천시 시인성등의 성능을 도모할 것
- 노면표시 작업 전 일기예보 점검. 2시간내 비 예상시 작업지시 불가
- 노면온도 점검을 위한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 공기온도 10℃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때 시공할 것
- 도색 노면은 완전 건조상태에서 실시하고, 노면기온 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사업시행
- 심사금액 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체 반영 발주 후 결과 송부
- 작업조건, 규격, 할증 등을 명시하여 향후 정산이 가능토록 내역서 작성